

학과구조 개선 규정

2018.03.01. 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(이하 ‘본교’ 라 한다)의 경쟁력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과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학과구조 개선이라 함은 신입생충원율, 재학생 등록율, 중도탈락률, 대외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학과를 대상으로 입학정원 축소 및 증가, 신입생 모집 중지, 학과 통합 및 폐과, 학과 신설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학과구조 개선 대상 학과의 선정) ①학과구조 개선 대상 학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로 정한다. (세부사항은 별표 1을 참조)

1. 최근 2년 간의 신입생 충원율 평균이 모집정원의 60% 미만 학과
2. 최근 4개 학기 재학생 등록율 평균이 70% 미만 학과
3. 당해 연도 재학생 등록율이 60% 미만 학과
4. 학과 소속 교원의 동의로 자발적인 학과구조 개선 요청이 있는 학과
5. 기타 여건에 따라 학과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과

②학과구조 개선 대상 학과 선정을 위한 학과평가는 매년 4월 중에 실시한다.

③학과구조 개선 관련 학과평가 및 일정관리, 제반운영관리는 교무행정처가 담당한다.

④대학발전위원회는 학과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학과구조개선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.

⑤정책적으로 신설 또는 학과명 변경, 통폐합 등의 조치를 시행한 학과의 경우는 1년 유예 후, 2년차부터 학과평가를 적용한다.

제4조(학과구조 개선의 절차) ①총장은 제3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구조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학과 중에서 대학발전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정원 축소 또는 학과 폐지, 학과명 변경, 통폐합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.

②학과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지표 및 지표산식, 평가 기간 또는 기준 일은 미래

수요, 정부 및 대학의 정책, 대학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며, 대학 발전위원회를 통해 세부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- ③총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구조 개선 대상학과로 선정되었지만, 학과가 미래지향적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과에 대하여 해당학과의 학과구조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학발전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학과구조 개선을 유예할 수 있다.
- ⑤학과구조 개선으로 인한 정원 축소 및 신입생 모집 중지, 신규학과 설치 등에 대한 결정은 당해연도 6월까지로 한다.
- ⑥총장은 학과구조 개선 결과로 정원 축소 학과, 신입생 모집 중지 학과, 신규학과 설치 결정 등에 대한 내부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제청한다.
- ⑦총장은 학과구조 개선 내용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통과되면, 차기 년도 신입생 모집에 반영한다.

제5조(학과 폐지) ①신설 또는 학과명 변경, 통폐합 등의 개선 조치가 있는 학과의 경우 2년차 학과 평가 결과 당해연도 신입생 충원율이 60% 미만 혹은 당해연도 재학생 등록률이 60% 미만일 경우 대학발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폐과할 수 있다.

②기존 학과의 경우 3조 1항에 의하여 대상 학과로 선정되면 대학발전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폐과 여부를 결정한다.

제6조(학과명 변경 및 통폐합)①학과에서 학과명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 책임 하에 교무행정처와 협의 후 총장이 결정한다.

②학과의 통폐합은 과년도 입학충원 결과와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학과구조 개선 방침에 따라 총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학과의 자구이행) ①제4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구조 개선 대상 학과로 선정된 해당 학과는 그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과구조개선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총장은 제출된 학과구조개선계획서를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그 승인 여부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다.

③총장은 학과의 자구 계획을 진행 중인 교원 중에 자구이행 기간 동안 교원업적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 이거나, 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 기간에 관계없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을 이사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.

제8조(학생의 보호) ①신입생 모집 중지가 결정된 학과의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장은 해당 학과 학생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간담회의 횟수와 일정, 간담회 참석 학생 범위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- ②신입생 모집 정지가 결정된 학과의 소속 학생들은 기존 학적을 보유할 수 있으며, 전과를 원할 때에는 학칙과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원하는 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하되, 학생 개인단위가 아닌 학과 단위로의 전과를 우선한다.
- ③총장은 신입생 모집 정지가 결정된 학과의 재학생 관리를 위하여 1인의 책임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
- ④총장은 신입생 모집 정지 후 해당학과에 휴·복학생이 있는 경우 책임 지도교수를 통하여 학생의 학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- 제9조(폐지된 학과 소속 교원의 신분 정리)** ①폐지된 학과 소속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한다. 단, 폐지된 학과와 유사한 학과에 교원의 결원이 있고 직권면직된 교원의 전공이 유사학과의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된 교원을 유사학과로 전환 배치할 수 있다.
- ②총장은 폐지된 학과의 교원을 비전임교원으로 전환 후 부속 및 부설기관 교원으로 발령하도록 이사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.
 - ③총장은 대학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의 자구이행을 성실히 수행한 교원의 소속 학과 변경을 이사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 및 시행세칙) 이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- ①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평가 대상 학과 선정기준

기준	기준 산정일	선정기준	비고
신입생 충원율	4월 1일	최근 2개년도 신입생 평균 충원율 60% 미만 학과	
재학생 등록율	4월 1일 10월 1일	최근 4개 학기 평균 70% 미만 학과	
재학생 등록율	4월 1일	당해연도 재학생 등록율 60% 미만 학과	